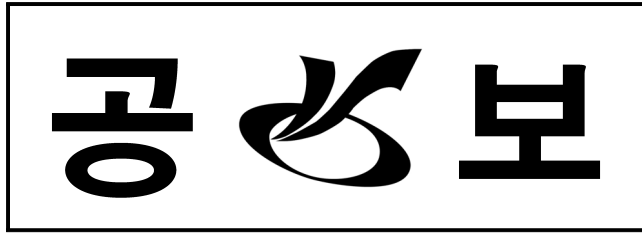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571호

2007년 3월 26일 월요일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6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73호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76호 공시송달공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82호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정정 ..... 20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6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을 근거로 현재 운영중인 검단어린이도서관과 건립중인 석남 어린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검단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기능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규정
- 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
- 문고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 운영의 위탁 및 준용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 조문수 : 제4장 제16조, 부칙 제2항,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자유열람실”이라 함은 도서 등을 보는 공간을 말한다.
3. “자료실”이라 함은 자료의 대출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료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료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기타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5조(입관료)**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관의 제한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협을 주거나 관내 질서나 분위기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4. 흥기나 폭발물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5.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수수료등)** ①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및 수강료는 별표2와 같다.

②도서관의 수강료는 개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할 계산으로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수강일이 15일 이상 남았을 경우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제8조(사용허가등)**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9조(변상)**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 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3장 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정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위원은 구의원 1명,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 중 1인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 7.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다만, 희망도서 등 소량의 수시구입은 제외)
- 8. 기타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문고등의 지원)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립문고 및 사립문고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4조(운영의 위탁)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검 단 어 린 이 도 서 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 147번지
석 남 어 린 이 도 서 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1번지

[별표2]

**수수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1. 자료복사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B5, A4	30원	1매당
	B4, A3	40원	

2. 교육수강료 : 월 4시간 기준 10,000원 (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실비)

3. 시설사용료 : 무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근거로 현재 운영중인 검단어린이도서관과 건립중인 석남어린이도서관의 시행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 회원가입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준수사항 및 대출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위탁 및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
- 자체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의 규정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서구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폐지
- 조문수 : 제20조, 부칙 제3항, 서식 4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유열람실 : 06:00 ~ 22:00
2. 자료실 : 10:00 ~ 18:00 (다만, 토·일요일은 10:00 ~ 17:00)
3. 문화교실 : 10:00 ~ 22:00

**제3조(휴관일)**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도서관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근 도서관의 휴관일과 다른 요일을 정할 수 있다.)
3. 도서의 정리·점검, 시설정비, 관내 전염병에 의한 학교 휴교령 조치에 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날

**제4조(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1매

**제5조(회원증 발급)** 제4조에 의한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정지등)** ①대출 만료일까지 도서를 미반납시에는 연체일수만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도서대출 기간을 30일이상 연체하면 회원 자격은 도서 반납일부터 90일간 정지된다.

②자료를 대출절차에 의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한다.
2. 관내 대출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3. 열람실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타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5.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무단 집회 및 면회를 할 수 없다.
7.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내대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②자료의 대출은 1인에 대하여 5권 이내로 하고,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③대출기간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중요자료로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기타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9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정지 및 자격상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출기한 1회 연체 시 연체한 일수
2. 대출기한을 2회 연체하고, 1월이하 연체자는 연체한 일수에 10일을 추가한 일수
3. 대출기한을 1월이상 2월미만 연체한 자는 6월간 대출 정지
4. 대출기한을 2월이상 3월미만 연체한 자는 1년간 대출 정지
5. 대출기한을 3월이상 연체한 자는 회원자격 상실
6. 도서를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자는 변상할 때까지

**제10조(관외대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 ②관외대출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는 5권 이내로 한다.
  2. 비도서 자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관외대출 제한)** ①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참고도서 및 비분자료
2. 비도서 중 원분자료
3. 관내에서 이용률이 많은 자료
4. 정기간행물 및 신문
5. 기타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관외대출 기간)** ①자료의 관외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 : 15일 이내
2. 순회문고 : 1년 이내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4조(자료 복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5조(위탁 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기증 자료)**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서회수 불능처리)**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인천광역시서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 인천광역시서구립문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이 규칙에 등록된 자료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회원 가입신청서**

어린이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모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동		
e-mail 주소			
학교명 (학년/반)	학교 ( / )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 )  
어린이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확인 :

**인천광역시서구청장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 1매.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 《유의사항》

1. 회원증 분실 및 회원신상 변경 사항은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 대출도서는 1회 5권이내로 하되 도서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부터 7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돌려주십시오.
5. 책을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6.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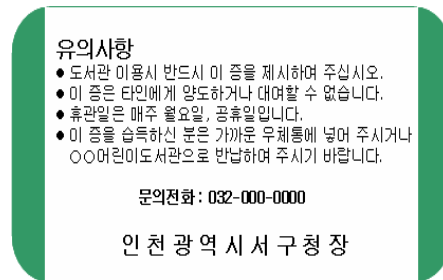
### 도서관 회원증

#### 1. 전자식 회원증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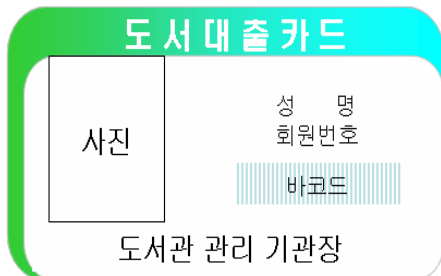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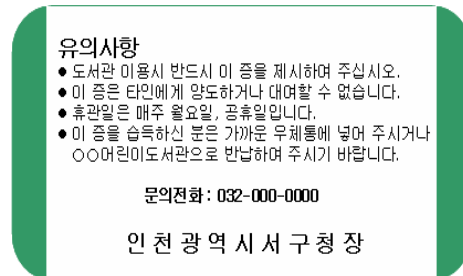
※ 회원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의 위치와 증의 규격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2. 바코드식 회원증

(전면)



(후면)



※ 회원정보를 수록한 바코드의 위치와 증의 규격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 )어린이도서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단 체 의 소 재 지 또 는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공 연 , 행 사 명 칭					
공 연 , 행 사 내 용					
사 용 기 간	. . . ~ . . .		사 용 인 원	명	
사 용 료					
비 고	첨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절-----취-----선-----

접수번호 :

( )어린이도서관 사용신청 접수증

○ 사용기간 : . . . ~ . . .  
 ○ 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와 같이 ( )어린이도서관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어린이도서관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

사 용 자	주 소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 / )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 용 시 설	<input type="checkbox"/> 문화교실 <input type="checkbox"/> 시청각실 <input type="checkbox"/> 부대설비(내역 : )			
사 용 기 간	. . . : ~ . . . :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료	일금 원 (₩ )			
허 가 조 건	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b>인천광역시서구청장</b>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73호

###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3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명 칭 :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나. 면 적 : 12,244,499㎡ (약68만평)

**2. 배경 및 목적**

가. 검단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확보

나. 무분별하게 산재된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다. 대규모의 신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4. 개발기간(방식) : 2006년 ~ 2011년(수용방식)**

**5. 토지이용계획**

가. 산업시설용지 : 1,329,559㎡

나. 지원시설용지 : 106,527㎡

다. 주 거 용 지 : 5,736㎡

다. 공공시설용지 : 802,677㎡

**6.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440-3414, FAX 440-3419)

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단지개발팀 (전화 260-5144, FAX 260-5129)

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전화 560-4762, FAX 560-4759)

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사무소 (전화 560-3256, FAX 560-3139)

- 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동사무소 (전화 560-4615, FAX 560-3478)
- 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3동사무소 (전화 560-4616, FAX 560-3498)
- 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사무소 (전화 560-3351, FAX 560-3359)

## 8. 기 타

관계도서 및 세부사항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자료를 열람 하신 후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76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석유판매업 등록을 받은 장소에서 폐업 후 영업하지 않고 있는 석유판매업소(용제판매소)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후 처분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미거주 등(우편물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3일

## &lt;공시송달내역&gt;

1. 제 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록취소)	
2. 당사자	업 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업소명	(주)우석화학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7번지
	대표자	표재선
	법인등록 번호	131411-0140435
3. 위반사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4. 처분내용	등록취소	
5. 공고기간	2007.3.23~2007.4.7(15일간)	
6.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560-4462)	
7.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82호

##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정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73호(2007. 3.23)로 공람공고된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 정정내용

당 초	정 정
1. 명 칭 :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나. 면적 : 12,244,499㎡ (약68만평)	1. 명 칭 :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나. <u>면적 : 2,244,499㎡ (약68만평)</u>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73호(2007. 3.23)로 공람공고된 사항중 상기 정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내용은 변경 없음.

2007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